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순천시 세계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4. 30. ~ 5. 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5. 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yungjee110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453호
----------	--------

발의연월일 : 2021. 4. 28.

박계수 · 최병배

발의자 : 김미애 · 박종호

박혜정 의원

1. 제정이유

- 우리시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로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종합계획수립과 공모사업의 추진 (안 제4조 ~ 제5조)
- 다.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
- 라. 의회 보고 (안 제7조)
- 마. 인센티브 지원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해당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해당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 연계성
 -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여부 및 해소 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 협의

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재원 부담 여부 및 매칭 재원 확보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②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되어 조정이 필요할 경우 특정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 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담당부서 및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순천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우수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표창,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관련 법령 등

1 정부예산의 확보 현황 및 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목표)	증감
계	498,343	555,354	620,000	64,646(11.6%)
국·도비사업(현안)	136,682	138,168	150,000	11,832(8.6%)
국·도비사업(연례반복)	193,905	238,499	250,000	11,501(4.8%)
균특 사업	48,480	58,158	60,000	1,842(3.2%)
국가직접사업	80,075	70,529	100,000	29,471(41.8%)
공모사업(생활SOC 포함)	39,201	50,000	60,000	10,000(20%)

2 정부예산의 단계

【 1단계 】 사업 발굴, 국비 신청 - 2021. 1월 ~ 4월

【 2단계 】 부처 예산 심의 - 2021. 3월 ~ 5월(부처안 확정)

【 3단계 】 기재부 예산 편성 - 2021. 5월 ~ 9월(정부안 확정)

【 4단계 】 국회 예산 심사 - 2021. 9월 ~ 12월(증액 및 확정)

3 국고(공모) 사업 관리 체계 구축

총괄팀
(재정협력팀)
(컨트롤타워 역할)

- 국고사업 현황 공유 및 총괄관리
- 국고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
- 국고사업 발굴 및 신청 검토(사업성, 매칭사업비 등)
- 대형 프로젝트 발굴 지원(필요시 용역추진)
- 국고사업 심사(서면, 현장, 발표) 시 행정지원
- 지방재정영향평가 등 사전이행사항 심의(부서 신청 시)

T/F 구성
(국별 구성)

- 국고(공모) 소관 부처별 T/F 구성
- T/F 팀별 자체 보고회 개최(사업성, 우선순위 등)
- 국고 활동 ‘방문의 날’ 지정 운영
-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T/F팀 상호 공유·협업

전부서

- 국고관련 중앙·전라남도·외부기관 등 수시 동향 파악
- 예측가능한 주기적·반복적 국고사업 사전 준비 철저
- 국고사업 추진상황 제출(매월)(서식1) ⇒ 기획예산실

예산팀

- 국고사업 매칭사업비 지원 검토

4 세부추진 계획

【 1단계 】 정보 파악 및 공유 단계

- 부처별 업무보고 및 예산 투자 방향 분석을 통한 사업동향 파악
- 공모기관 담당부서(담당자)와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동향 파악
- 정부부처 및 광주전남연구원 등 공모 정보 홈페이지 모니터링
- 공모사업 부서 접수 문서 등 확인 및 공유(공모기관 → 사업부서)
- 공모사업 정보 공유(공문 알림 및 새올 게시판 게재)

【 2단계 】 공모사업 준비 단계

- 총괄부서 - 사업부서와의 협업체계 구축, 공모방향 및 응모여부 결정
- 사전절차 이행 확인 : 지방재정영향평가 및 위치(부지매입 등), 주민의견 수렴 등
-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 및 전문가 컨설팅(정부정책 방향 부합성 등)

【 3단계 】 응모 단계

- 최종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심사자료 등 준비
- 응모 전 검토사항, 공모심사 절차, 제안서 평가 및 작성기준 등 숙지
- 유리한 공모 선정을 위한 전략적 접근 : 평가기준표 중 높은 배점 중점 작성
- 정부정책 연계 사업계획 수립 및 지역의 특화자원 활용 연계방안 도출
- 지방비 매칭 및 유사 사업과의 연계 방안 강조, 지자체의 의지 확보 노력
- 지역자원 및 연관사업 발굴,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및 경쟁력 강화

【 4단계 】 선정 단계

- 인적네트워크 활용, 동향 파악 및 선정 지원
- 공모기관 맞춤형 평가 대비
 - 서면, 현장평가, PPT 발표 평가 등 평가 단계별 선제적 대응

【 5단계 】 평가 및 환류 단계

- 공모사업 선정 노하우 및 사례 공유
- 미선정 사업에 대한 사유 분석 및 보완, 개선방안 마련 및 재도전 지원
-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평가 및 환류 체계 강화(인센티브 강화)

순천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복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454호
----------	--------

발의연월일 : 2021. 4. 28.

발 의 자 : 이복남 · 김미애
박혜정 · 남정옥
최병배 의원

1. 제정이유

-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순천시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책무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 세계유산의 등재 (안 제5조)
-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6조 ~ 안 제11조)
- 의견청취 (안 제12조)
- 경비보조 등 (안 제13조)
- 사무의 위탁 (안 제14조)
- 홍보 및 포상 (안 제15조)
- 시행규칙 (안 제16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다. 타 지자체 입법례 : 전국 44개 지자체(광역시·특별14, 기초30 / 전남 : 보성, 장성)

순천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순천시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이해 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순천시민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세계유산의 등재) 시장은 잠정목록을 포함한 시의 우수한 유산의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통하여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한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3.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교육·학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

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건축·도시계획·관광·생태환경·문화역사 등 관련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 국장
-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계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실비보상)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강형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455호
----------	--------

발의연월일 : 2021. 4. 29.

발의자 : 강형구 · 오행숙
김미연 의원

1. 제정이유

-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시키며, 타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의 자재를 우선 구매하고,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의 비율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제4조)
- 나. 사업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 가능성 검토, 하도급 적정성 심사 및 지역 내 생산자재와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안 제6조 ~ 제8조)
- 다.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되도록 권장
(안 제9조)
- 라.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안 제10조 ~ 제16조)
- 마.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건설업체 선정(안 제17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바람직한 지역 건설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양질의 설계·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조(분할발주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검토·시행할 수 있다.

제7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시장은 법 제3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인력의 우선사용) 시장은 지역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 내 생산제품, 장비, 인력(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노동자를 말한다)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49퍼센트 이상 권장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높이도록 권장
 - 가. 도급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50퍼센트 이상
 - 나. 도급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70퍼센트 이상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의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모범 건설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 도시, 건축 등 시설업무 및 계약분야를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

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관련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모범 건설업체 선정 등)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를 관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건설산업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건설산업이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 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제6조(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산업진흥시책의기본 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 진출의 지원
4.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환경보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5.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대책
6.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대책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시장의 동향, 건설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 및 도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및 공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건설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 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을 하는 업종과 용역업, 자재의 생산 또는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 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관내에 두고 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 개선, 신기술 정보 제공,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 건설산업체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으로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 업체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자에게 지역 내의 생산 제품, 장비,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을 인·허가할 때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지역 건설산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분할 발주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구의 분할 시공·계약이나 공중의 분리 시공·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주계약자 공동도급)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해 공동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이행 상황 파악)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 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건설산업체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설치)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 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 건설산업체의 애로 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소속 건설·회계 업무를 관장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지역 건설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의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3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4. 28.

1. 개정이유

- 시의 사무 중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민원 업무 처리의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 도로과 위임사무 중 “도로점용사용허가” 관련 법조항 개정에 따라 근거 및 적용 법률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업무 위임

- 대상사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변경 및 해제신고)
-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3, 5
- 위임내용

부서명	대 상 사 무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토지 정보과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 (변경 및 해제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3, 5	읍·면·동장

② 도로점용 사용허가 관련 법 조항 변경

- (조항 변경) 도로과 위임사무 중 도로점용 사용허가 관련 법 조항 변경
 -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제61조로 변경

부서명	대 상 사 무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도 로 과	• 3. 도로점용사용허가	「도로법」 제61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읍·면장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5 「도로법」 제61조

5. 관련부서 의견

- 부서 의견수렴(2021. 4. 9. ~ 4. 16.)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생략(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4조)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4. 16.(여성가족과-852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4. 14.(기획예산실-560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생략(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4조)

제14조(예고의 예외) 예고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법령 또는 당해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3. 사업소·출장소 등의 설치조례, 정원조례, 직제규칙 등 행정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4.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노인장애인과란 다음에 토지정보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토 지 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5	읍·면·동장
------------	--	--	--------

별표 2의 도로과란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시의 사무 중 읍면동 위임 사무				[별표 2] 시의 사무 중 읍면동 위임 사무			
과소별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과소별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	⋮	⋮	⋮	⋮	⋮	⋮	⋮
노인 장애인과	공중목욕장의 관리 및 운영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읍·면·동 장	_____	_____	_____	_____
< 신 설 >				토지 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업무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5	읍·면·동 장
도로과	1. 접도구역 관리	도로법 제20조, 제49조	읍·면·동 장	도로과	1. _____	_____	_____
	2. 도로무단 점용자 단속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6조	"		2. _____	_____	_____
	3. 도로점용사용 허가	도로법 제38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		3. _____	도로법 제61조, _____	_____
⋮	⋮	⋮	⋮	⋮	⋮	⋮	⋮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3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4. 28.

1. 개정이유

- 순천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회가 그 기능과 재산을 승계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 및 일부 용어 수정

2.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 및 일부 용어 수정(안 제1조, 제15조~제23조)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납부 의무 대상 명확화(안 제11조)
-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지원 근거 마련(안 제24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24. ~ 2021. 4. 13.)결과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4. 5.(여성가족과-746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3. 22.(기획예산실-426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24.(순천시 공고 제2021-745호)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 을 삭제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로, “주민자치센터(이하 ” 자치센터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을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 “자치센터” 란” 을 “ “주민자치센터” 란” 으로, “제4조 제1항” 을 “제4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민자치회” 란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동 별로 설치된 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센터와 위원회는 다음 각호” 를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 라 한다)는 다음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장” 을 “장려” 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주민자치센터” 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를 “제2항에도” 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회” 를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 를 “자치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의견” 을 “자치회의 의견” 으로, “위원회의 위원” 을 “자치회의 위

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는”을 “자치회는”으로, “위원회의”를 “자치회의”로, “감안하여 제10조 제6항”을 “고려하여 제10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위원장”을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자치회”로,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를 “자치회”로,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장은”을 “자치회장”으로, “위원장 명의”를 “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자치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일”을 “전날”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은 제10조에 따른”을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따른 수강료 등의 징수대상 프로그램 등의 이용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자치회”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위원회”를 “자치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원장”을 “자치회장”으로, “위원회”를 “자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자치회장”으로, “위원회의 심의와”를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5조 앞에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3호 중 “체육행사”를 “자치활동 성과공유”로 한다.

제2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위원회”를 “자치회”로 한다.

별표 2 제5호 중 “3자녀”를 “2자녀”로 한다.

별표 3 문화·취미 교양 강좌의 강사수당란 “20,000원” 을 “25,000원” 으로 하고, 같은 표 생활체육의 강사수당란 “25,000원” 을 “30,000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장 총 칙</u>	<u><삭 제></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u>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u> ----- ----- ----- ----- <u>주</u> <u>민자치센터의 설치</u>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u>제4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u> 을 총칭한다.	제2조(정의) ----- -----. 1. “주민자치센터”란 ----- --- <u>제4조제1항</u> ----- ----- -----.
<u><신 설></u>	2. “주민자치회”란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동 별로 설치된 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3. (생략)	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3조(원칙) <u>자치센터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u>	제3조(원칙) <u>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u>

여야 한다.

1. (생략)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
의 조장

3. ~ 5. (생략)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
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기능) ① (생략)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
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
항의 제1호 및 제6호와 관련된 기
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생략)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
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
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 및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

1. (현행과 같음)

2. -----
-- 장려

3. ~ 5. (현행과 같음)

<삭제>

제4조(설치 등) ① -----

-----.
----- 해당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당 -----

-----.

③ 제2항에도 -----

--.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현행과
같음)

② -----
-----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
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과 유사 시설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은 읍·면·동장이 운영하며, 프로그램은 위원회에서 운영한다.

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

③ -----

----- 해당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 ① -----

----- 자치회-----.

② ----- 자치회의 의견

----- 자치회의 위

원 -----

③ 자치회는 -----

----- 자치

회의 -----

----- 고려하여

제10조 제6항-----

⑤ -----

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른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0조(수강료) ① (생략)

②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징수한다.

③ 수강료는 별표 1에 따른 기준과 범위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장 명

----- 고려하여 -----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수강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③ -----

----- 자치회-----

-----.

④ (현행과 같음)

⑤ -----
자치회-----

-----.

⑥ 자치회장은 -----

-----자치회장 명

의로 한다.

제10조의2(수강료의 반환) ① 위원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될 때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
을 반환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생 략)

제11조(이용 등) ①·② (생 략)

③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
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13조(수당) ① (생 략)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당금액은 별표 3에 따른 기준
과 범위에서 읍·면·동장과 협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2. 3. (생 략)

의-----.

제10조의2(수강료의 반환) ① 자치
회장-----

1. 2. (현행과 같음)

3. ---- 전날-----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용 등)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따른 수
강료 등의 징수대상 프로그램 등
의 이용에 대하여 -----
-----.

④ -----

----- 자치회-----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자치회-----.

2. 3. (현행과 같음)

제14조(보고) ① 위원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장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분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해당 분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제14조(보고) ① 자치회장-----

-- 자치회-----

② 자치회장-----

-----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

<삭 제>

<삭 제>

<삭 제>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삭 제>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일반 주민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게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

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삭 제>

<삭 제>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읍·면·동장은 위
원 및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읍·면·동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
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
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
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
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
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
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
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
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
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
/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삭 제>

<삭 제>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
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
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
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
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에서 월 1회에 한하여 실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생략)

3.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4. (생략)

제2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삭 제>

<삭 제>

제24조(예산지원 등) -----

-----.

1.·2. (현행과 같음)

3. -----
--- 자치활동 성과공유 -----

4. (현행과 같음)

제25조(시행규칙 등)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별표 2]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기준

감 면 대 상	감면율
1. ~ 4. (생략) 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 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 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6. ~ 7. (생략)	50%

[별표 3]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구 분	강사수당 (1시간 기준)	비고
문화·취미 교양 강좌	20,000원	실습 재료비 본인 부담
생활체육	25,000원	

필요-----

자치회-----
-----.

[별표 2]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기준

감 면 대 상	감면율
1. ~ 4. (현행과 같음) 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 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2자 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6. ~ 7. (생략)	50%

[별표 3]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구 분	강사수당 (1시간 기준)	비고
문화·취미 교양 강좌	25,000원	실습 재료비 본인 부담
생활체육	30,000원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3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4. 28.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조례에 반영

2. 주요내용

- 주민세 세세목 용어 정비(안 제2조)
 - (현행) 균등분 → (개정안) 개인분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31. ~ 4. 20.)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3. 26.(여성가족과-691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3. 30.(기획예산실-471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31.(순천시 공고 제2021-828호)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균등분” 을 “개인분”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u>균등분</u>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의 연세액 납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 ----- ----- <u>개인분</u> ----- -----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4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4. 28.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등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
- 근거 법령 이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대상 공동명의자 확대 및 조문 정비(안 제2조)
 - 기존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 추가 :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 자격을 가진 장애인과 그 가족 등으로 확대
-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 조문 삭제(안 제3조)
- 지역특산물생산단지 중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관련법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5조)
- 상위법 이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근거법 개정(안 제6조)
- 기업도시 및 기업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조례 경감률 신설(안 제6조의2)
- 감면 제외 부동산 근거법 정비(안 제10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31. ~ 4.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3. 30.(여성가족과-715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3. 30.(기획예산실-471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31.(순천시 공고 제2021-827호)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를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으로,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를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을 “영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는 감면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기간”

을 15년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는 감면비율” 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은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기간” 을 10년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는 감면비율” 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2(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을 “법 제177조”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
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
일까지 면제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
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
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
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
과액을 포함한다)를 경감하는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영 제8조
제6항 -----

-----.

<삭 제>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2. (생략)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
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
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
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
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

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공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 조 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는 감면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는 감면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는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u>같은 조 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본조 전부 개정 2018.3.26.]</u> <u><신 설></u>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u>제6조의2(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u> 제10조(감면 제외대상) ----- ----- 법 제177조----- ----- -----.
--	--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자 추가확대에 따른 시 세입 감소

2. 비용추계의 전제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시각 장애인*(구 장애등급 4급) 중 최근 자동차세 감면현황을 참고하여 장애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영주자격 외국인등록 장애인 까지 확대하였을 때 추가 감면세액을 추정
 - 시각장애인 4급(현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 1,330명 내외
→ 감면신청자는 60 ~ 70건 내외로 전체 감면대상의 4 ~ 6% 수준
 - 외국인등록을 한 장애인 : 3명 내외(추계 무의미로 미반영)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참고자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시각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현황(최근 3년)

구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합계	204	27,376	69	9,756	72	9,210	63	8,410	100%
본인(단독)	36	3,977	12	1,293	13	1,433	11	1,251	15%
배우자	51	6,970	13	1,805	19	2,350	19	2,815	33%
직계혈족	98	13,691	36	5,399	34	4,567	28	3,725	44%
형제자매	5	740	2	310	2	290	1	140	2%
직계혈족의 배우자	14	1,998	6	949	4	570	4	479	6%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2,100	-420	-420	-420	-420	-420
세입(a)	-2,100	-420	-420	-420	-420	-420
세출(b)	0	0	0	0	0	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세 감면액을 보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2020년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인 장애인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의 비율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록자 중 감면 미신청자나 향후 추가로 배우자 직계혈족 등으로 공동 등록하여 감면 신청하는 경우는 5% 내외 예상
 - 8,410,000원(2020년 세액) × 5% ⇒ 420,000원 세입 감소

5. 협의사항

- 해당 없음

6. 부대의견

- 해당 없음

7. 작성자

- 자치행정국 세정과 과장 김왕성(☎749-6100)
- 세무행정팀장 김석채(☎749-6101)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4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4. 28.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 및 세율을 조례에 반영

2. 주요내용

- 현행 5개 주민세 세세목 → 3개 세세목으로 간소화 및 용어 정비
(안 제3장 제1절·제2절 제목, 안 제7조~제8조)
 - (현행) 개인 균등분 주민세 → (개정안) 개인분 주민세
 - (현행)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재산분 주민세 → (개정안) 사업소분 주민세
 - (현행) 종업원분 주민세 → (개정안) 좌 동
-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하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부과(안 제6조~제7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31. ~ 4.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3. 26.(여성가족과-691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3. 30.(기획예산실-471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31.(순천시 공고 제2021-825호)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 을 “개인분” 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 을 “사업소분” 으로 한다.

제7조 중 “재산분” 을 “사업소분” 으로, “제1항의 표준세율” 을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 로 한다.

제8조 중 “재산분” 을 “사업소분”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장 주민세 제1절 <u>균등분</u>	제3장 주민세 제1절 <u>개인분</u>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u>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u>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u>
1. <u>개인</u> 가. <u>순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u> <u>10,000원</u> 나. <u>순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u> <u>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 적용</u>	
2. <u>법인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 적용</u>	
제2절 <u>재산분</u>	제2절 <u>사업소분</u>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u>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u>	제7조(세율) ----- <u>사업소분-----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u>
제8조(신고의무) <u>재산분</u> 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무) <u>사업소분</u> ----- ----- ----- ----- -----.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4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4. 28.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 변경과 법제처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조례에 반영

2. 주요내용

- 주민세 세세목 명칭 변경(안 제3조)
 - (현행) 재산분 ⇒ (개정안) 사업소분
- 법제처 사용 용어 정비(안 제4조, 제11조, 제14조)
 - “기타” ⇒ “그 밖에”, “규정에 의하여” ⇒ “따라”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31. ~ 4. 20.)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3. 26.(여성가족과-691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3. 30.(기획예산실-471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31.(순천시 공고 제2021-821호)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산분” 을 “사업소분”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법 제97조 부터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97조부터 제103조에 따라” 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채납 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u>재산분</u> 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방세를 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		

		----- <u>사업소분</u> -----		

		-----.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생략)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u>기타</u>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u>그 밖에</u>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생략)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97조 부터 제103조		② -----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
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
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
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③ (생 략)

에 따라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순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의안 번호	제344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4. 28.

1. 제정이유

- 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기본 이념(안 제1조~제2조)
- 관련 용어 정리(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교육자치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기능(안 제5조~제6조)
-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안 제7조~제9조)
- 예산 등의 지원(안 제10조)
- 센터의 예산 결산, 지도 점검, 공무원의 파견(안 제11조~제13조)
-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관계, 시행규칙 등(안 제14조~제15조)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24. ~ 4. 1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3. 16.(여성가족과-624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2. 23.(평생교육과-1967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3. 17.(기획예산실-401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24.(순천시 공고 제2021-754호)

순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교육자치 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공공성·공동체성·자발성과 참여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교육자치 기반 구축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교육”이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결합하여 학교(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경제·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순천시와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4. “민·관·학 거버넌스”란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 등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5. “교육민회”란 학생, 학부모, 교사, 공무원, 지역활동가, 시의원 등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교육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제안하고 참여하는 열린 모임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관해서는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육자치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의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센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축
2.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3. 마을교육공동체 육성 지원
4. 마을학교(배움터) 조성
5. 교육민회 운영
6. 마을교육활동가 육성, 운영
7. 순천형 역사, 생태, 문화기반 특색 교육과정 개발
8. 청소년 자치, 자기주도 프로젝트, 민주시민 교육
9.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컨설팅
10. 농촌유학사업 지원
11. 그 밖에 혁신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혁신교육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교육민회에서 제안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순천시, 교육지원청, 센터 활동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순천시 공무원(평생교육과장, 팀장, 직원), 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장학사, 직원), 센터(센터장, 직원) 마을교육활동가, 교사(과건 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9조(임기) 협의회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로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센터의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① 시장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사업 등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협력센터 설치운영,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원

○ 관련 조문 : 제5조(교육자치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센터 기능), 제10조
(예산 등의 지원)

• (제5조)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의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축
2.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3. 마을교육공동체 육성 지원
4. 마을학교(배움터) 조성
5. 교육민회 운영
6. 마을교육활동가 육성, 운영
7. 순천형 역사, 생태, 문화기반 특색 교육과정 개발
8. 청소년 자치, 자기주도 프로젝트, 민주시민 교육
9.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컨설팅
10. 농촌유학사업 지원
11. 그 밖에 혁신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함.

○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민간위탁금을 추계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2025년
총 비용(a-b)	-1,65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1,65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65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국 비	200,000	100,000	100,000	0	0	0
도 비	0	0	0	0	0	0
시 비	1,450,000	230,000	230,000	330,000	330,000	330,000

5. 비용추계의 내역(산출기초 등)

○ 민간위탁(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 330,000천원(1년)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문화관광국 평생교육과 과장 양효정(☎ 6753)

평생교육기획팀장 김정숙(☎ 6754)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4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4. 28.

1. 개정이유

-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 자문단 기능을 일원화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기존) ~을 심의한다. → (개정) ~을 심의·조정한다.
 -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삽입
 - 평생학습관 자문단 관련 조항 삭제 및 역할 일원화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실무위원회 근거 조항(안 제11조의2)
-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 근거 조항 삽입(안 제12조)
- 순천시 평생학습관 자문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6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해당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3. 19.(여성가족과-651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3. 29.(평생교육과-331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29.(순천시 공고 제2021-794호)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설치”를 “설치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순천시 및 순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5.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실무위원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순천시 평생교육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 제16조의1 및 제1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 중 “협의회 및 자문단”을 “협의회”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협의회, 자문단에 출석한 위원, 단원”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한다</u> .	제6조(기능) ----- ----- <u>심의 · 조정한다</u>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평생학습관 <u>설치</u> 에 관한 사항 <u><신 설></u>	2. ----- <u>설치 및 운영</u> -----
	3. <u>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7조(구성) ① · ② (생 략)	제7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협회의의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계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과 학계 및 관계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u> .	③ <u>협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
	1. <u>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u>
	2. <u>순천시 및 순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u>
	3. <u>평생교육 전문가</u>
	4. <u>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u>
	5. <u>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u>
<u><신 설></u>	제11조의2(실무위원회) ① <u>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u> .
	② <u>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순천시 평생교육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u> .
	③ <u>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u>

제12조(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생략)

<신설>

<신설>

제16조(순천시 평생학습관 자문단의 설치·운영)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제13조의 사업 수행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순천시 평생학습관 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둔다. 단, 순천시민대학 등의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의1(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 단원은 평생학습관 담당국장,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

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

<삭제>

<삭제>

하는 시의원 2명, 평생교육과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6조의2(준용) 자문단 단원의 임기,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관계기관 등 협조) 협의회 및 자문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협의회, 자문단에 출석한 위원, 단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21조(관계기관 등 협조) 협의회-----

-----.

제2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

-----.

-----.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445호
----------	--------

○ 제출자 : 순천시 장

○ 제출일시 : 2021. 4. 28.

1. 제정이유

- 순천시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 규정을 통해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
- 급속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노인을 비롯한 전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 : 고령자들이 연령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도시 ※ 전국 260개 지자체 중 20개 도시 인증

2. 주요내용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제7조)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 체계 확립
-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안 제8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고령친화도 평가 등
- 생활환경 편의증진(안 제9조)
 - 생활편의시설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회참여, 권익보호, 고용, 건강 증진 등 고령친화도시 추진 사업 명시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5조)
 -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및 계획 및 인증에 관한 심의 등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24. ~ 4. 13.)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26.(여성가족과-485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3. 22.(기획예산실-425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3. 24.(순천시 공고 제2021-755호)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순천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성별,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3. 재원조달 방안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시행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3.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안전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성과측정, 모니터링,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3. 고령친화도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344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4. 28.

1. 제정이유

-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으로 어르신 품위 유지 및 건강증진
-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통해 보편적 복지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효과 창출

2. 주요내용

- 목적 및 지원대상의 규정(안 제1조~제3조)
 - ‘어르신 품위 유지비’란 순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목욕 및 이·미용비를 말함.
 - 지급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80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원
- 지원기준 및 신청·결정(안 제4조~제5조)
 - 건강바우처는 월 1만원으로 지원, 반기별 지급
 - 건강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건강바우처 카드 제작(안 제6조)
- 환수처리 등(안 제12조)
 - 품위유지비(건강바우처) 일부 및 전부 환수의 경우를 규정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29. ~ 4. 19.)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26.(여성가족과-483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3. 25.(기획예산실-447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3. 29.(순천시 공고 제2021-793호)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품위유지를 위한 목욕 및 이·미용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바우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건강바우처”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목욕 및 이·미용비의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건강바우처 지원대상은 건강바우처 지급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건강바우처는 카드로 지급한다.

② 건강바우처는 월 1만원으로 지원하되, 반기별로 지급한다.

③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때에는 건강바우처를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되, 건강바우처 지급일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다음 반기 지급기준일로 한다.

④ 건강바우처 카드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건강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강바우처 지원을 요청하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그 지원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결정된 지원대상에게 건강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에게 건강바우처 카드를 배부한다.

제6조(건강바우처 카드 제작) 건강바우처 카드는 “순천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전용 카드”를 표기하여 제작한다.

제7조(수령) ① 건강바우처 카드는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등재된 직계가족이 수령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제8조(사용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건강바우처 카드 잔액 포인트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는 경우
4. 건강바우처 카드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

제9조(사용처의 지정 등) ① 건강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순천시 관내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강바우처 카드 사용처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사용기한) 건강바우처 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받은 해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자의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 관리) 읍·면·동장은 건강바우처 카드 교부 및 사용여부를 전산 시스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건

강바우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13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① 시장은 건강바우처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건강바우처 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건강바우처 카드의 요금 정산은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들이 사용처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사용처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사무의 위임) 건강바우처 카드 및 사용자 관리, 사용 중지 등에 관한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건강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사용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신청서 (건강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						처 리 기 한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지원 대상자 (카드 발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연령(만)	성별	주 소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시설 생활자는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지 않는 자					
신청인 범 위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유의 사항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하며, 동법 제40조, 제41조에 따라 고발 등 형사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망 등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을 위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지원대상자의 정보(연락처, 주소 등) 변경 시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5. 건강바우처 카드 사용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6.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 간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카드 사용이 중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록 및 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서 약 서

본인(대리 신청인 포함)은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을 받을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1. 건강바우처 카드를 지원대상자 이외에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건강바우처 카드를 목적 외 사용하지 않습니다.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카드 지원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확인(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건강바우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건강바우처 지원대상자 수혜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제공받는 자 : 순천시, 건강바우처카드 운영업체
2. 이용·보유 목적, 항목, 기간, 동의 거부권리, 거부 시 불이익 내용은 위와 동일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해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전용 건강바우처 카드 교부대장

[illegible]

[별지 제3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전용 건강바우처 카드 수불대장

[illegible]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3조(지원대상) 건강바우처 지원대상은 건강바우처 지급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② 건강바우처는 월 1만원으로 지원하되, 반기별로 지급한다.
- 제13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① 시장은 건강바우처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건강바우처 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 상 : 만 80세 이상 노인 12,018명 (2021년 3월말 기준, 순천시 거주자)
- 기 준
 - 기본비용 : 노인 1인당 연 120,000원
 - 수반비용 : 노인 1인당 2,400원 (바우처 카드 사용 수수료 2%)
- 추계기간 : 2021년도부터 2025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6,818,782	-735,502	-1,493,280	-1,530,000	-1,530,000	-1,530,00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6,818,782	735,502	1,493,280	1,530,000	1,530,000	1,530,000
건강바우처 지급	6,685,080	721,080	1,464,000	1,500,000	1,500,000	1,500,000
수수료 지급	133,702	14,422	29,280	30,000	30,000	3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시 비	6,818,782	735,502	1,493,280	1,530,000	1,530,000	1,530,000

5.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2021년 세출)

○ 건강바우처 60,000원 × 12,018명 = 721,080,000원

○ 카드수수료 1,200원 × 12,018명 = 1,421,600원

※ 참고자료 - 2021년 3월말 기준 순천시 인구현황 / 하반기(6개월) 비용 산출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없음

8. 작성자(참여자)

○ 시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과장 위영애(☎ 749-6166)
노인복지팀장 김은미(☎ 749-6289)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4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4. 28.

1. 개정이유

-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 인용 조문 변경(안 제10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 사회취약계층의 시설물개량 비용 지원 비용 상향(안 제14조제3항)
 - 최고 500만원 → 최고 1000만원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31. ~ 2021. 4.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3. 15.(생태환경과-5610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3. 22.(기획예산실-425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29.(순천시 생태환경센터 공고 제2021-784호)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38조의4”를 “제122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시설물개량 비용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보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 ② (생략)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4조(지원범위) ① (생략) ② (생략)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시설물개량 비용으로 최고 <u>5백만원</u>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0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제122조----- ----- -----. ④ (생략) 제14조(지원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1,000만원</u>----- --. <u>다만, 국·도비의 보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u>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안 제14조(지원범위)] 시장은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의 슬레이트 시설물을 개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보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사회취약계층 주택의 슬레이트 시설물 개량비용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1,067,500	213,500	213,500	213,500	213,500	213,500
세입(a)	-	-	-	-	-	-
세출(b)	1,067,500	213,500	213,500	213,500	213,500	213,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1,067,500	213,500	213,500	213,500	213,500	213,500
국 비	533,750	106,750	106,750	106,750	106,750	106,750
도 비	106,750	21,350	21,350	21,350	21,350	21,350
시 비	427,000	85,400	85,400	85,400	85,400	85,4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 사업기간 : 매년
- 산 출 액 : 213,500천원
- 산출근거 : 6,100천원 × 35동 = 213,5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생태환경센터 생태환경과 과장 강승일(☎749-5493)
생태환경팀장 한연경(☎749-5768)